

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 
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  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 
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 국 기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2년 11월 14일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16일

3. 제안이유

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과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정의, 책무 등을 규정함(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)

나.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과 실태조사를 규정함(안 제4조 및 안 제5조)

다. 후계농어업인등에 관한 지원사업과 지도·감독을 규정함  
(안 제6조 및 안 제7조)

라. 지원사업의 제한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8조 및 안 제9조)

## 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)

### 가. 제출배경

- 우리나라 농촌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청년 농업인의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(이하 “후계농어업인등”이라 한다)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·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
- 이를 위해 정부는 2021년 5월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고, 충청북도는 2019년 「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」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, 충청북도 내 청년어업인과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 있음

### 나. 조례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

- 이 조례안은 본칙 9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, 부칙에는 이 조례안 제정으로 「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」를 폐지하고, 시행 전 경과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
- 조례의 적용대상을 법 제2조에 따른 ‘후계농어업인’과 ‘청년농어업인’으로 그 대상을 농업인뿐만 아니라 어업인에까지 확대한 것으로 「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서 적용대상을 농어업인으로 확대한 제안취지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됨

-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고 있고,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하였음
-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책무와 청년농어업인등의 육성·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으로, 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경쟁력있는 후계농어업인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
- 안 제6조는 후계농어업인등의 안정적인 정책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7가지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
  - 창업 및 정착 지원, 교육 및 컨설팅 지원, 생산품 판로 지원, 농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지원, 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후계농어업인등을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
- 안 제5조와 안 제7조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후계농어업인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된 보조금 운영 등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해 확인·검사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사업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
- 충청북도 외 타 시도의 입법례는 아래 표와 같음

연번	조례명	시행일	비고
1	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	2022. 10. 18.	일부개정
2	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	2022. 8. 17.	일부개정
3	부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	2022. 2. 16.	제정
4	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	2022. 1. 13	전부개정

연번	조례명	시행일	비고
5	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	2021. 12. 31.	전부개정
6	전라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	2021. 12. 31.	전부개정
7	강원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	2021. 7. 30.	전부개정
8	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	2021. 7. 20.	제정
9	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	2021. 7. 8.	제정
10	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	2020. 9. 21.	제정
11	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	2019. 10. 11.	제정
12	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19. 2. 20.	제정
13	<b>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</b>	<b>2019. 2. 15.</b>	<b>제정</b>
14	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	2018. 12. 31.	제정
15	경상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	2016. 12. 29.	일부개정

※ 타 시도의 경우에도 법 제정(2021. 5. 20.)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 관한 육성·지원 조례가 최근 개정되거나 제정되고 있어, 이번 제정안은 충청북도가 청년농업인만을 육성 및 지원하던 것을 후계농어업인등으로 확대 및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

#### 다. 종합의견

-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과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체계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
- 현재 충청북도의 농어촌은 고령화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함